

생활고에 아픈 아버지 방치한 20대... 법원은 왜 '살인' 판결을 내렸나

- 법, 가족에게 돌봄 의무 부과...여기면 '부작위 살인'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합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간병을 도맡았던 청년 A(22)씨가 아버지를 방치해 굶어 죽게 한 이른바 '간병 살인' 사건.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집을 나가 아버지와 A씨 뿐이던 가정에서 아버지마저 몸져눕게 되자 치료비를 내고 나면 두 사람은 쌀 살 돈도 없을 정도의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겹게 아버지를 돌보던 A씨의 모습을 보

다 못한 아버지가 먼저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곡기를 끊은 아버지를 울면서 지켜봤던 A씨는 아버지가 누워 있는 방에 닷새간 들어가지 않았고, 아버지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놓고 정치권까지 선처를 호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 부모를 살해한 '존속 살해'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유기치사죄 아닌 존속살인죄가 인정된 이유가 뭔가요?

먼저, 유기치사죄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호를 포기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존속 살해보다 형량이 가볍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아들은 아버지의 목을 조르는 등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간병하지 않았음으로써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건데요, 그렇기에 “죽인 건 아니잖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돌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람이 돌봄을 행하지 않아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부작위 살인'이라고 합니다.

◇부작위 살인,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법률상 ‘보호 의무가 있는 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살인입니다. 가족은 법이 보호 의무를 부여한 존재입니다.

좀더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바닷물에 나의 배우자와 옆집 어린아이가 동시에 물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나는 옆집 아이를 구했고, 배우자는 안타깝게 사망하게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배우자에 대한 부작위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구조 의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번 사건에서도 아들에게 부작위 살인이 적용된 이유입니다.

만약 가족을 구하려다 옆집 아이가 사망하게 됐다면 도덕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선한 사마리아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교통사고뿐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운전자의 잘못이 없더라도 사고 피해자를 반드시 구조해야 합니다. 그냥 자리를 떠나면 뺑소니가 됩니다.

◇안타까운 존속 살인,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살인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지만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국가와 사회가 그를 위해 해줄 것은 없었는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병원의 역할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나빴는지, 그리고 퇴원 당시 병원의 의학 적 권고를 무시했는지 등의 사정이 명확하지 않아 선불리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병원에서 퇴원할 때 병원이 여러 복지

택에 대해 설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 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이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도 고려됐습니다. 아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별이가 있다면 아버지는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 1억원 이상의 고소득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숨진 아버지의 생계 급여 지급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버지의 나이가 65세가 되지 않아 요양 급여를 받지 못하고, 노동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는 장애 진단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외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었을 듯합니다. 사실상 의료와 요양에서 사각지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누가 이 청년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빈곤의 대물림은 강요되어서도 안 되며 부양을 가족에게만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막을 수 있는 간병살인, 이제는 막아야 할 때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출처/조선일보)